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

1. 일반 현황								
수요기관	서울주택도시공사		공사명	항동 공공주택사업 택지조경공사				
계약방법			계약자	(주)호반건설		낙찰율		
기술부서			담당자			전화 :	팩스 :	
계약현황	총공사 계약현황				시공중인 공사 계약현황			
	계약일	2017-11-01	계약금액	13,880,189,000	계약일		계약금액	
	착공일	2017-11-03	준공예정일	2019-10-31	착공일		준공예정일	
물가변동 조정현황	조정회수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8회
	조정방법	지수조정						
	조정기준일	2019-01-01						
	조정율	3.44%						
	조정금액	311,394,000						
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현황								
물가변동 조정율(A)	3.44%	물가변동 경과기간	425 일 경과		입찰기준일(기준시점) : 2017년 10월 12일			
					계약체결일(기준시점) : 2017년 11월 01일			
					조정기준일(비교시점) : 2019년 01월 01일			
물가변동 계약금액 (B)		13,880,189,000		물가변동 공정율		예정공정율	30.000%	
						실행공정율	30.100%	
물가변동 제외금액 (C)		4,177,937,000		물가변동 적용대가 (D) (B-C = D)		9,702,252,000		
선금급 공제금액 [F]		-22,362,376		물가변동 증액금액 [G] (A×D = G)		333,757,000		
				물가변동 실증액금액 = (G + F)		311,394,000		
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								
번호	첨부서류명				부수	비고		
1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							
2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							
3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							
4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								
<p>1.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프로그램 내용은 입찰당시(직전 물가변동조정 당시)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음,</p> <p>2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,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와 예규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산정한 바 3.44% 이상 상승하였으며,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귀 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</p>								
<h2 style="margin: 0;">2019년 02월</h2>								